

## 가스용 수지호스 제조의 시설 · 기술 · 검사 기준

Facility/Technical/Inspection Code for Manufacture of  
Resin Hoses for Gases

가스기술기준위원회 심의 · 의결 : 2014년 10월 17일

산업통상자원부 승인 : 2014년 11월 17일



## 가 스 기 술 기 준 위 원 회

**위 원 장**

이 수 경 :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

**부위원장**

오 신 규 : 호서대학교 교수

**당 연 직**

조 웅 환 :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장

박 기 동 : 한국가스안전공사 부사장

**고압가스분야**

김 진 석 :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부원장

김 청 균 : 홍익대학교 교수

윤 기 봉 : 중앙대학교 교수

하 동 명 : 세명대학교 교수

김 창 기 : 한국기계연구원 책임연구원

**액화석유가스분야**

정 태 용 : 국민대학교 교수

안 병 성 :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

윤 재 건 : 한성대학교 교수

백 종 배 : 한국교통대학교 교수

장 석 웅 : 에스아이피엔씨(주) 회장

이 기연 : 한국LPG산업협회 전무

장 기 현 : (주)귀뚜라미 전무

**도시가스분야**

김 광 섭 : 대륜 E&S 상무

오 신 규 : 호서대학교 교수

이 수 경 :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

고 재 육 : 광운대학교 교수

문 일 : 연세대학교 교수

이 기준은 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」 제22조의2, 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 제27조의2 및 「도시가스사업법」 제17조의4에 따라 가스기술기준 위원회에서 정한 상세기준으로, 이 기준에 적합하면 동 법령의 해당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기준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.



KGS Code 제·개정 이력

| KGS Code 제·개정 이력 |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종목코드번호           | KGS AA537 2014           |
| 코 드 명            | 가스용 수지호스 제조의 시설·기술·검사 기준 |



## 목 차
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1. 일반사항 .....            | 1 |
| 1.1 적용범위 .....           | 1 |
| 1.2 기준의 효력 .....         | 1 |
| 1.3 다른 기준의 인정 .....      | 1 |
| 1.3.1 신기술 제품 검사기준 .....  | 1 |
| 1.3.2 외국 제품 제조등록기준 ..... | 1 |
| 1.4 용어정의 .....           | 1 |
| 2. 제조시설기준 .....          | 2 |
| 2.1 제조설비 .....           | 2 |
| 2.2 검사설비 .....           | 3 |
| 3. 제조기술기준 .....          | 3 |
| 3.1 설계(해당 없음) .....      | 3 |
| 3.2 재료 .....             | 3 |
| 3.3 두께(내용 없음) .....      | 4 |
| 3.4 구조 및 치수 .....        | 4 |
| 3.5 가공(내용 없음) .....      | 4 |
| 3.6 용접(해당 없음) .....      | 4 |
| 3.7 열처리(해당 없음) .....     | 5 |
| 3.8 성능 .....             | 5 |
| 3.8.1 제품 성능 .....        | 5 |
| 3.8.2 재료 성능 .....        | 5 |
| 3.9 표시 .....             | 6 |
| 3.9.1 제품표시 .....         | 6 |
| 3.9.2 합격표시 .....         | 7 |
| 4. 검사기준 .....            | 7 |
| 4.1 검사종류 .....           | 7 |
| 4.1.1 제조시설에 대한 검사 .....  | 7 |
| 4.1.2 제품에 대한 검사 .....    | 7 |
| 4.2 공정검사 대상 심사 .....     | 9 |

|  |    |
|--|----|
| 4.2.1 심사 신청 .....                      | 9  |
| 4.2.2 심사 방법 .....                      | 9  |
| 4.2.3 판정위원회 .....                      | 10 |
| 4.3 검사항목 .....                         | 10 |
| 4.3.1 제조시설에 대한 검사 .....                | 10 |
| 4.3.2 제품에 대한 검사 .....                  | 10 |
| 4.4 검사방법 .....                         | 12 |
| 4.4.1 제조시설에 대한 검사 .....                | 12 |
| 4.4.2 제품에 대한 검사 .....                  | 13 |
| 4.5 그 밖의 검사기준 .....                    | 15 |
| 4.5.1 수입품 검사 .....                     | 15 |
| 4.5.2 검사일부 생략 .....                    | 15 |
| 4.5.3 불합격 제품 파기 방법(해당 없음) .....        | 16 |
| 4.5.4 세부검사기준 .....                     | 16 |
| 부록 A 가스용품 제조업소 품질시스템 운영에 대한 일반기준 ..... | 17 |

## 가스용 수지호스 제조의 시설 · 기술 · 검사 기준 (Facility/Technical/Inspection Code for Manufacture of Resin Hoses for Gases)

### 1. 일반사항

#### 1.1 적용범위

이 기준은 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」(이하 “규칙”이라 한다) 별표 4 제5호 및 별표 7 제4호가목에 호스 중 가스용 수지호스(이하 “호스”라 한다) 제조의 시설 · 기술 · 검사기준에 대하여 적용한다.

#### 1.2 기준의 효력

1.2.1 이 기준은 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」(이하 “고법”이라 한다) 제33조의2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심의 · 의결(안건번호 제2014-8호 및 9호, 2014년 10월 17일)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(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-589호, 2014년 11월 17일)을 받은 것으로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상세기준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.

1.2.2 이 기준을 지키고 있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규칙 별표 7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.

#### 1.3 다른 기준의 인정

##### 1.3.1 신기술 제품 검사기준

규칙 별표 7 제5호가목에 따라 기술개발에 따른 새로운 호스의 제조 및 검사방법이 이 기준에 따른 시설 · 기술 · 검사 기준에는 적합하지 않으나 안전관리를 저해하지 아니한다고 지식경제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가스용품에 한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. <개정 09.5.15>

##### 1.3.2 외국 제품 제조등록기준 <신설 12.8.13>

규칙 제14조의2제3항 단서에서 정한 “외국의 제조관련 시설기준과 제조기술기준” 이란 법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상세기준을 말한다.

#### 1.4 용어정의

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4.1 “정기품질검사”란 생산단계검사를 받고자 하는 제품이 설계단계검사를 받은 제품과 동일하게

제조된 제품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양산된 제품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성능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.

**1.4.2** “상시샘플검사”란 제품확인검사를 받고자 하는 제품에 대하여 같은 생산단위로 제조된 동일제품을 1조로 하고 그 조에서 샘플을 채취하여 기본적인 성능을 확인하는 검사를 말한다.

**1.4.3** “수시품질검사”란 생산공정검사 또는 종합공정검사를 받은 제품이 설계단계검사를 받은 제품과 동일하게 제조되고 있는지 양산된 제품에서 예고 없이 시료를 채취하여 확인하는 검사를 말한다.

**1.4.4** “공정확인심사”란 설계단계검사를 받은 제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 및 자체검사공정에 대한 품질시스템 운용의 적합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.

**1.4.5** “종합품질관리체계심사”란 제품의 설계·제조 및 자체검사 등 호스 제조 전 공정에 대한 품질시스템 운용의 적합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.

**1.4.6** “형식”이란 구조·재료·용량 및 성능 등에서 구별되는 제품의 단위를 말한다.

**1.4.7** “공정검사”란 생산공정검사와 종합공정검사를 말한다.

**1.4.8** “수지호스”란 호스 안충의 재료를 고무나 염화비닐이 아닌 수지 등으로 제조한 호스를 말한다.

**1.4.9** “일반형 호스”란 롤 형태로 제작되는 호스로서 임의의 길이로 절단하여 사용하는 호스를 말한다.

**1.4.10** “접속기구형 호스”란 단품형태로 제작되는 호스로서 일정길이를 가지며 연결을 위한 별도의 접속기구가 부착된 호스를 말한다.

## 2. 제조시설기준

### 2.1 제조설비

호스를 제조하려는 자는 이 제조기준에 따라 호스를 제조하기 위하여 다음 기준에 적합한 제조설비를 갖춘다. 다만, 허가관청이 부품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부품을 제조하는 전문생산업체의 설비를 이용하거나 그가 제조한 부품을 사용할 수 있다.

- (1) 원료배합설비 및 압출성형설비
- (2) 보강층 편조 설비
- (3) 가황설비
- (4) 나사가공·구멍가공 및 외경 절삭이 가능한 공작 기계(접속기구형 호스만을 말한다)
- (5) 연결기구와 호스를 조립할 수 있는 동력용 조립 설비(접속기구형 호스만을 말한다)
- (6) 그 밖의 호스 제조에 필요한 설비

## 2.2 검사설비

2.2.1 호스를 제조하려는 자는 제품의 성능을 확인·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검사설비를 갖춘다.

2.2.1.1 검사설비의 종류는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자체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같다.

- (1) 치수측정설비
- (2) 내가스시험용 침적시험설비
- (3) 염수분무시험설비
- (4) 이탈력시험설비(접속기구형 호스만을 말한다)
- (5) 만능재료시험기(인장강도, 신장율, 박리강도)
- (6) 기밀시험설비
- (7) 내압·파열시험설비
- (8) 저온시험설비
- (9) 그 밖의 호스검사에 필요한 설비

2.2.1.2 검사설비의 처리능력은 해당 사업소의 제품생산능력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.

2.2.2 2.2.1에 불구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기관에 의뢰하여 설계단계검사 항목의 시험·검사를 하는 경우 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기관과 설계단계검사 항목에 필요한 시험·검사설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2.2.1에 따른 검사설비 중 해당 설계단계검사 항목의 검사설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.

- (1) 고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(이하 “한국가스안전공사”라 한다)
- (2) 고법 제35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검사기관(이하 “검사기관”이라 한다)
- (3) 「국가표준기본법」에 따라 지정을 받은 해당 공인시험·검사기관

## 3. 제조기술기준

### 3.1 설계(해당 없음)

### 3.2 재료

호스의 재료는 그 호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.

3.2.1 호스 안충재료는 내가스 성능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.

3.2.2 호스 이음쇠는 내식성이 있는 재료(동 및 합금강, 스테인리스 강재)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

내식성이 있는 재료로 제조하고, 동시에 사용상 지장이 있는 결함이 없는 것으로 한다.

### 3.3 두께(내용 없음)

### 3.4 구조 및 치수

호스는 그 호스의 안전성 · 편리성 및 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기준에 따른 구조 및 치수를 가지는 것으로 한다.

**3.4.1** 호스는 안충 · 보강충 · 바깥충의 구조로 하고, 안충과 바깥충의 두께가 균일한 것으로 한다. 다만, 보강충은 직경 0.18 mm 이상의 3가닥 강선을 사용한다.

**3.4.2** 호스 안충과 바깥충은 잘 접착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.

**3.4.3** 호스의 안지름은 표 3.4.3과 같이한다.

표 3.4.3 호스의 안지름

| 구 분 | 안지름(mm) | 허용차(mm)   |
|-----|---------|-----------|
| 1 종 | 6.3     | $\pm 0.7$ |
| 2 종 | 9.5     |           |
| 3 종 | 12.7    |           |

**3.4.4** 일반형 호스의 길이는 50 m를 표준 길이로 하고, 표준 길이 이외의 것은 주문자와 제조자와의 협의에 따른다.

**3.4.5** 접속기구형 호스의 길이는 1 000 mm, 2 000 mm, 3 000 mm를 표준 길이로 하고, 그 최대길이를 3 000 mm로 하며 길이의 허용차는  $\pm 2\%$  이내로 한다. 다만, 표준길이 이외의 것은 주문자와 제조자와의 협의에 따른다.

**3.4.6** 접속기구형 호스의 이음방법은 호스엔드 접속구, 관용테이퍼 나사, 유니온, 쿼커플러 등으로 한다.

### 3.5 가공(내용 없음)

### 3.6 용접(해당 없음)

### 3.7 열처리(해당 없음)

## 3.8 성능

호스는 그 호스의 안전성과 편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기준에 따른 성능을 가지는 것으로 한다.

### 3.8.1 제품 성능

#### 3.8.1.1 내압 성능

호스는 3 MPa의 압력으로 실시하는 내압시험에서 이상이 없고, 파열압력은 4 MPa 이상인 것으로 한다.

#### 3.8.1.2 기밀 성능

호스는 0.2 MPa 이하의 압력에서 실시하는 기밀시험에서 누출이 없는 것으로 한다.

#### 3.8.1.3 내열 성능

호스는 (120±2) °C 공기 중에서 48시간 이상 유지한 후 최소 굴곡반경으로 굽혔을 경우 균열이나 부풀음 등이 없는 것으로 한다.

#### 3.8.1.4 내한 성능

호스는 최소 0.5 m길이의 호스를 (-25±3) °C의 온도에서 24시간 경과 후 호스길이의 2/3부분에서 45° 예각을 이루도록 굽혔을 경우 균열이나 파손 등이 없는 것으로 한다.

#### 3.8.1.5 내이탈 성능

접속기구형 호스의 이음쇠는 100 mm/min 속도로 인장 하였을 때 호칭 6.3 mm의 경우 400 N 이상, 호칭 9.5 mm 및 12.7 mm의 경우 600 N 이상에서 5분 이내에 이탈되지 아니하도록 하며, 0.2 MPa의 압력으로 실시하는 기밀시험에서 누출이 없는 것으로 한다.

#### 3.8.1.6 접착 성능

호스의 안충과 바깥충의 접착 박리 강도는 1.2 kN/m{3.1 kg/25 mm} 이상으로 한다.

### 3.8.2 재료 성능

#### 3.8.2.1 내가스 성능

호스의 안충은 -20 °C의 액화석유가스액 · 40 °C의 액화석유가스액 및 -25 °C 의 공기 중에서 각각 24시간 방치한 후 부피변화율이 (-3~10) % 이내인 것으로 한다.

#### 3.8.2.2 인장 성능

호스 안충의 인장강도는  $14.7 \text{ kN/m}$  [ $7.5 \text{ kgf/5 mm}$ ] 이상인 것으로 한다.

### 3.8.2.3 내노화 성능

호스의 안충은  $70^\circ\text{C}$ 에서 48시간 공기가열노화시험을 한 후 인장강도 저하율이 20% 이하인 것으로 한다.

### 3.8.2.4 난연 성능

호스는 버너를 이용한 난연성 시험을 실시하여 5초 이상 연소불꽃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.

### 3.8.2.5 내오존 성능

호스는 시험온도  $(40 \pm 2)^\circ\text{C}$ , 오존농도  $((50 \pm 5) \times 10^{-6})\%$ 로 96시간 방치한 후 최소굽곡반경으로 굽곡하여 균열이나 갈라짐이 없는 것으로 한다.

### 3.8.2.6 투과 성능

호스는 온도  $(35 \pm 0.5)^\circ\text{C}$ 에서 0.9 m의 호스 안에 순도 98% 이상 프로판가스를 담은 상태로 24시간 경과 후 30시간까지의 호스를 통한 가스투과량은 표 3.8.2.6과 같이 한다.

표 3.8.2.6 호스의 가스투과량

| 종 류 | 가스투과량(mL/h) |
|-----|-------------|
| 1 종 | 3 이하        |
| 2 종 | 5 이하        |
| 3 종 | 7 이하        |

### 3.8.2.7 내절단 성능

칼날길이가 500 mm인 절단시험기를 사용하여 고정된 한쪽 날 끝에서 100 mm 떨어진 위치에 호스를 놓고, 다른 쪽 끝에 6 kg의 추를 매달아 5분간 유지한 후 기밀시험에서 누출이 없는 것으로 한다.

## 3.9 표시

호스에는 그 호스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기준에 따른 표시를 한다.

### 3.9.1 제품표시

호스에 표시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- (1) 품명
- (2) 종류(1종, 2종 또는 3종)
- (3) 제조자명
- (4) 제조번호 또는 로트번호
- (5) 최고사용압력
- (6) 용도

- (7) 제조연월
- (8) 품질보증기간
- (9) 합격표시 및 "옥내용" 표시

### 3.9.2 합격표시

호스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호스라는 것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합격표시를 한다.

3.9.2.1 합격표시는 그림 3.9.2.1과 같이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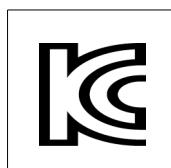


그림 3.9.2.1 합격표시 <개정 14.11.17>

3.9.2.1.1 합격표시 크기는 가로 20mm, 세로 16mm로 한다.

3.9.2.1.2 합격표시 색상은 노란색바탕에 검은색 문자로 한다.

3.9.2.2 일관공정으로 호스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제조공정 중에 그 합격표시를 하게 할 수 있다. 다만, 호스 제조공정 중에 합격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크기와 바탕색을 그 호스규격에 맞게 할 수 있다.

## 4. 검사기준

### 4.1 검사종류

가스용품의 검사는 제조시설에 대한 검사와 제품에 대한 검사로 구분한다.

#### 4.1.1 제조시설에 대한 검사

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호스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가 호스 제조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완공한 경우에는 제조시설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.

#### 4.1.2 제품에 대한 검사

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호스를 제조 또는 수입한 자가 호스의 성능을 확인·유지하기 위하여 다음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법 시행령이 정하는 가스용품은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.

#### 4.1.2.1 설계단계검사

규칙 별표 7에 따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설계단계검사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공인시험·검사기관이 인증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부품에 대한 설계단계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.

- (1) 가스용품 제조사업자가 그 업소에서 일정형식의 제품을 처음 제조하는 경우
- (2) 가스용품 수입자가 일정형식의 제품을 처음 수입하는 경우
- (3) 설계단계검사를 받은 형식의 제품의 재료나 구조가 변경되어 제품의 성능(출구압력 범위 구분을 포함한다)이 변경된 경우
- (4) 설계단계검사를 받은 형식의 제품으로서 설계단계검사를 받은 날부터 매 5년이 지난 경우

#### 4.1.2.2 생산단계검사

규칙 별표 7에 따라 설계단계검사에 합격된 호스에 대하여 다음 기준에 따른 생산단계검사를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생산단계검사는 자체검사능력 및 품질관리능력에 따라 표 4.1.2.2에 따른 제품확인검사·생산공정검사 또는 종합공정검사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받을 수 있다.

표 4.1.2.2 생산단계검사의 종류·단위 및 주기

| 검사의 종류 | 대상  | 구성항목       | 검시단위 | 주기        |
|--------|---|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|
| 제품확인검사 | 생산공정검사 또는 종합공정검사 대상 이외 품목                     | 정기품질검사     | 형식   | 2개월에 1회   |
|        |   | 상시샘플검사     | 형식   | 신청 시마다    |
| 생산공정검사 | 제조공정·자체검사공정에 대한 품질시스템의 적합성을 충족할 수 있는 품목       | 정기품질검사     | 형식   | 3개월에 1회   |
|        |   | 공정확인심사     | 품목   | 3개월에 1회   |
|        |   | 수시품질검사     | 대표형식 | 1년에 2회 이상 |
| 종합공정검사 | 공정 전체(설계·제조·자체검사)에 대한 품질시스템의 적합성을 충족할 수 있는 품목 | 종합품질관리체계심사 | 품목   | 6개월에 1회   |
|        |   | 수시품질검사     | 대표형식 | 1년에 1회 이상 |

##### 4.1.2.2.1 제품확인검사는 다음에 따라 실시한다.

- (1) 제품확인검사는 정기품질검사와 상시샘플검사로 구분하여 각각 실시한다. 이 경우 상시샘플검사는 정기품질검사에 합격한 경우 실시한다.
- (2) (1)에 따라 검사에 합격한 제품의 형식은 2개월에 1회 정기품질검사를 받는다. 다만, 월 20대 이하로 생산 또는 수입하는 같은 형식의 제품에 대해서는 정기품질검사를 생략한다.
- (3) (1)에 따라 제품의 형식은 검사신청 시마다 상시샘플검사를 실시한다.

##### 4.1.2.2.2 생산공정검사는 다음에 따라 실시한다.

- (1) 생산공정검사는 정기품질검사·공정확인심사 및 수시품질검사로 구분하여 각각 실시한다.
- (2) 심사를 받고자 신청한 제품의 공정확인심사는 부록 A에 따라 적절하게 문서화된 품질시스템 이행실적이

3개월 이상 있는 경우 실시한다.

- (3) 수시품질검사는 정기품질검사 및 공정확인심사를 받은 품목에 대하여 1년에 2회 이상 예고 없이 실시한다.
- (4) 수시품질검사는 품목 안의 대표성 있는 1종의 형식에 대하여 정기품질검사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한다.
- (5) 생산공정검사를 받는 자는 필요에 따라 제품확인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.

#### 4.1.2.2.3 종합공정검사는 다음에 따라 실시한다.

- (1) 종합공정검사는 종합품질관리체계심사 및 수시품질검사로 구분하여 각각 실시한다.
- (2) 심사를 받고자 신청한 제품의 종합품질관리체계심사는 부록 A에 따라 적절하게 문서화된 품질시스템 이행실적이 3개월 이상 있는 경우 실시한다.
- (3) 수시품질검사는 종합품질관리체계심사를 받은 품목에 대하여 1년에 1회 이상 예고 없이 실시한다.
- (4) 수시품질검사는 품목 안의 대표성 있는 1종의 형식에 대하여 정기품질검사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한다.
- (5) 종합공정검사를 받는 자는 필요에 따라 제품확인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.

## 4.2 공정검사 대상 심사

### 4.2.1 심사 신청

가스용품 제조자가 부록A에 따라 가스용품을 제조한 이행실적이 3개월 이상 있는 경우에는 생산공정검사 또는 종합공정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

### 4.2.2 심사 방법

심사는 공정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, 공정검사에 불합격한 자 또는 4.4.2.2.2(5)에 따른 재공정검사를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 실시한다.

#### 4.2.2.1 신규 · 불합격 또는 재공정검사 업소 심사

공정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, 공정검사에 불합격한 자 또는 4.4.2.2.2(5)에 따른 재공정검사를 신청하는 자(이하 “공정검사 신청자” 라 한다)에 대한 공정확인심사나 종합품질관리체계심사의 심사기준은 부록 A에 따른다.

#### 4.2.2.2 정기 심사

3개월에 1회 하는 공정확인심사와 6개월에 1회 하는 종합품질관리체계심사의 경우에는 주기 내의 변경사항, 공정관리, 자체검사 및 합격표시 활용 등 부록 A에서 정한 품질시스템의 유지 상태를 심사한다.  
생산공정검사 또는 종합공정검사의 심사는 다음에 따라 실시한다.

##### 4.2.2.2.1 종합공정검사는 종합품질관리체계심사와 수시품질검사로 구분하여 각각 실시한다.

##### 4.2.2.2.2 심사를 받고자 신청한 제품의 종합품질관리체계심사는 부록 A에 따라 적절하게 문서화된 품질시스템 이행실적이 3개월 이상 있는 경우 실시한다.

**4.2.2.2.3** 수시품질검사는 종합품질관리체계심사를 받은 품목에 대하여 1년에 1회 이상 예고 없이 실시한다.

**4.2.2.2.4** 수시품질검사는 품목 중 대표성 있는 1종의 형식에 대하여 정기품질검사와 같은 방법으로 한다.

**4.2.2.2.5** 종합공정검사를 받는 자는 필요에 따라 제품확인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.

### **4.2.3 판정위원회**

생산공정검사 및 종합공정검사 결과 합·부 판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판정위원회를 둔다.

**4.2.3.1** 판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**4.2.3.2** 위원은 가스안전이나 품질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심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대표할 수 있는 자 가운데에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사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.

**4.2.3.3**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## **4.3 검사항목**

### **4.3.1 제조시설에 대한 검사**

규칙 별표 7에 따라 호스의 제조시설 검사는 제조설비 및 검사설비를 갖추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항목에 대하여 실시한다.

- (1) 2.1에 따른 제조설비 적합 여부
- (2) 2.2에 따른 검사설비 적합 여부

### **4.3.2 제품에 대한 검사**

규칙 별표 7에 따라 호스에 대한 검사는 제조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에 따라 설계단계검사와 생산단계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.

#### **4.3.2.1 설계단계검사**

제조기준에의 적합 여부에 대하여 실시하는 설계단계검사의 검사항목은 다음과 같다. 다만,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공인시험·검사기관이 성능을 인증한 부품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부품에 대한 설계단계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.

- (1) 3.2에 따른 재료 적합 여부
- (2) 3.4에 따른 구조 및 치수 적합 여부
- (3) 3.8에 따른 성능 적합 여부
- (4) 3.9에 따른 표시 적합 여부

#### 4.3.2.2 생산단계검사

제조기준에의 적합 여부에 대하여 실시하는 생산단계검사의 검사종류별 검사항목은 다음과 같다.

##### 4.3.2.2.1 제품확인검사

###### (1) 정기품질검사

- (1-1) 3.4에 따른 구조 및 치수의 적합 여부
- (1-2) 3.8.1.1에 따른 내압 성능의 적합 여부
- (1-3) 3.8.1.2에 따른 기밀 성능의 적합 여부
- (1-4) 3.8.1.5에 따른 내이탈 성능의 적합 여부
- (1-5) 3.8.2.4에 따른 난연 성능의 적합 여부
- (1-6) 3.8.2.7에 따른 내절단 성능의 적합 여부

###### (2) 상시샘플검사

- (2-1) 3.4에 따른 구조의 적합 여부
- (2-2) 3.9에 따른 표시의 적합 여부

#### 4.3.2.2.2 생산공정검사

##### (1) 정기품질검사

정기품질검사의 검사항목은 4.3.2.2.1(1)에 따른다.

##### (2) 공정확인심사

공정확인심사의 심사항목은 표 4.3.2.2에 따른다.

##### (3) 수시품질검사

수시품질검사의 검사항목은 4.3.2.2.1(1)에 따른다.

#### 4.3.2.2.3 종합공정검사

##### (1) 종합품질관리체계심사

종합품질관리체계심사의 심사항목은 표 4.3.2.2에 따른다.

##### (2) 수시품질검사

수시품질검사의 검사항목은 4.3.2.2.1(1)에 따른다

표 4.3.2.2 공정확인심사 및 종합품질관리체계심사 항목

| 구분   | 심사항목  | 적용 여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
|------|-------|---|-------------|
|      |       | 공정확인심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종합품질관리 체계심사 |
| 일반사항 | 조직    | 적정한 기술적·업무적 능력이 있는 조직 확보                | ○           |
|      |       | 잠재적인 고장원인을 제품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 연구 또는 개발조직 보유 | ○           |
|      | 품질시스템 | 적정한 품질시스템 운영 및 운영성과 검토                  | ○           |
|      | 문서관리  | 적정한 문서관리시스템 유지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          |
|      | 인적자원  | 품질에 영향을 주는 직원 적격성 유지관리                  | ○           |
|      | 시설·장비 | 제품의 요구사항 및 품질관리에 적합한 시설 및               | ○           |

|         |            | 장비 확보   |   |   |
|---------|------------|---|---|---|
| 설계      | 설계 · 개발    | 제품의 요구사항에 적합한 설계 및 개발시스템 확보                     |   | ○ |
|         |            | 잠재적 고장영향분석, 신뢰성 평가 등을 통한 제품설계 증명 및 출력물 제공결과     |   | ○ |
|         |            | 설계 · 개발의 타당성 확인 및 변경 절차 운영                      |   | ○ |
| 제조      | 구매         | 구매품에 대한 적정한 관리체계 유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| ○ |
|         |            | 공급자 평가의 구매정책 반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○ |
|         | 생산         | 제품의 요구사항에 적합한 생산공정 보유 및 실행 증명                   | ○ | ○ |
|         |            | 공정승인합격판정기준 보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| ○ |
|         |            | 통계적 기법을 활용한 공정관리능력 증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○ |
|         |            | 관리계획서 및 작업지침서 운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○ |
|         |            | 예방 및 예측 보전, 생산차공구 관리시스템 운영                      |   | ○ |
| 자체검사    | 검사방법 및 절차  | 제품적합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검사방법 및 절차 유지                    | ○ | ○ |
|         |            | 계수값 데이터 샘플링에 대한 합격수준은 무결점 수준유지                  |   | ○ |
|         |            | 측정장치 결정 및 유효한 결과를 보장하기 위한 소급성 유지, 기록관리 등의 절차 유지 | ○ | ○ |
|         |            | 측정시스템 분석 수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○ |
|         |            | 설계단계검사 전체 항목에 대한 자체검사(1회/년) 실행                  | ○ |   |
|         |            | 설계단계검사 전체 항목에 대한 자체검사(2회/년) 실행                  |   | ○ |
|         |            | 검사기관의 운영요건(ISO 17020)에 준하는 시스템의 운영              |   | ○ |
|         | 시정 및 예방 조치 | 부적합 사항 관리 및 재발방지를 위한 예방조치 운영                    | ○ | ○ |
|         |            | 내부감사  | ○ | ○ |
| 의무      | 합격표시       | 합격표시에 대한 문서화된 관리규정 유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| ○ |
|         |            | 합격표시 제작에 관하여 별도로 문서화된 규정 유지                     |   | ○ |
|         | 교육         | 품질관리시스템 교육이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| ○ |
|         | 안전관리       | 제품불량사고 및 부적합제품 유통 방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| ○ |
| 그 밖의 사항 |            | 그 밖의 안전유지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| ○ |

## 4.4 검사방법

### 4.4.1 제조시설에 대한 검사

제조시설에 대한 검사는 4.3.1에 따른 제조설비 및 검사설비를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필요한 설비를 모두 갖춘 경우 합격한 것으로 한다.

### 4.4.2 제품에 대한 검사

#### 4.4.2.1 설계단계검사

설계단계검사 방법은 검사항목별 제조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명확하게 판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사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.

#### 4.4.2.2 생산단계검사

생산단계검사 방법은 검사항목별 제조기준에 적합한지 명확하게 판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에 따른다.

##### 4.4.2.2.1 제품확인검사

###### (1) 샘플링

(1-1) 정기품질검사 시료 수는 2개로 한다.

(1-2) 상시샘플검사를 하기 위한 시료의 채취 기준은 다음과 같다.

(1-2-1) 같은 생산단위로 제조된 동일 제품을 1조로 한다.

(1-2-2) (1-2-1)에 따라 형성된 조에서 채취하는 시료 수는 표 4.4.2.2.1(1)①과 같이한다. 다만, 연속된 제품 형태는 표 4.4.2.2.1(1)② 와 같이한다.(50)

표 4.4.2.2.1(1)① 상시샘플검사 시료 수

| 1조를 형성하는 수 | 10개 이하 | 11개 이상 100개 이하 | 101개 이상 300개 이하 | 301개 이상 700개 이하 | 701개 이상 3000개 이하 | 3001개 이상       |
|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시료 수       | 전수     | 10개 이상         | 15개 이상          | 20개 이상          | 25개 이상           | 검사신청 수량의 1/100 |

표 4.4.2.2.1(1)② 상시샘플검사 시료 수

| 1조를 형성하는 수    | 20개 이하 | 21개 이상 60개 이하 | 61개 이상 100개 이하 | 101개 이상 200개 이하 | 201개 이상 |
|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|
| 시료 수 (50 m/개) | 2개     | 5개 이상         | 7개 이상          | 10개 이상          | 15개 이상  |

###### (2) 합부판정

(2-1) 제품확인검사는 정기품질검사와 상시샘플검사를 실시하여 모두 합격한 경우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.

(2-2) 상시샘플검사는 채취한 시료를 검사하여 합격한 조는 그 조에 속하는 전제품이 합격한 것으로 하고, 불합격한 조는 그 조에 속하는 전제품이 불합격한 것으로 한다.

#### 4.4.2.2.2 공정검사

##### (1) 샘플링

생산공정검사와 종합공정검사의 정기품질검사 및 수시품질검사 시료 수는 2개로 한다.

##### (2) 합부판정

###### (2-1) 공정검사 신청자 합부판정

공정검사 신청자에 대한 생산공정검사나 종합공정검사의 합·부 판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. 이 경우 판정위원회의 결정전까지는 종전의 검사결과를 따른다.

(2-1-1)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정기품질검사와 공정확인심사 또는 종합품질관리체계심사의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판정위원회에 제출한다.

(2-1-2) 판정위원회는 제출된 보고서를 심의하여 합·부를 결정한다. 이 경우 심의결과 품질시스템의 일부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조건부 합격을 할 수 있다.

(2-1-3) 형식별 정기품질검사와 품목에 대한 공정확인심사에 모두 합격하였을 경우 생산공정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.

(2-1-4) 종합품질관리체계심사에 합격하였을 경우 종합공정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.

###### (2-2) 정기 공정검사 합부판정

3개월에 1회 하는 생산공정검사와 6개월에 1회 하는 종합공정검사에 대한 합·부 판정은 다음과 같다.

(2-2-1)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정기품질검사 및 공정확인심사 또는 종합품질관리체계심사를 실시하여 합·부를 결정한다.

(2-2-2) 형식별 정기품질검사와 품목에 대한 공정확인심사에 모두 합격하였을 경우 생산공정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.

(2-2-3) 종합품질관리체계심사에 합격하였을 경우 종합공정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.

###### (2-3) 수시품질검사 합부판정

수시품질검사에 대한 합·부 판정은 정기품질검사와 같은 방법으로 검사를 실시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결정한다.

###### (3) 검사결과 처리

###### (3-1) 공정검사 신청자의 검사결과 처리

공정검사 신청자에 대한 생산공정검사나 종합공정검사의 결과처리는 다음과 같다.

(3-1-1)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심의에 합격한 경우 신청자에게 합격통지서를 발급한다.

(3-1-2) 심사에 조건부 합격을 한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른다.

(3-1-2-1) 신청자는 1개월 이내에 품질시스템 보완결과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한다.

(3-1-2-2)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제출된 보완결과를 검토하여 보완이 완료되었다고 확인된 경우 합격처리 한다.

(3-1-2-3)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조건부 합격판정을 받은 신청자가 기한 내에 조치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처리한다.

(3-1-3) 심사에 불합격한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른다.

(3-1-3-1)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불합격내용을 신청자에게 통보한 후 제품확인검사를 실시한다.

(3-1-3-2) 불합격 통보를 받은 신청자가 생산공정검사나 종합공정검사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판정위원회에서 불합격 통보를 한 날로부터 3개월 이후에 생산공정검사나 종합공정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.

(3-1-3-3) 종합공정검사에 불합격한 신청자는 생산공정검사로 전환할 수 있다.

###### (3-2) 정기 공정검사 결과처리

3개월에 1회 하는 생산공정검사와 6개월에 1회 하는 종합공정검사의 결과처리는 다음과 같이한다.

(3-2-1)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검사에 합격한 경우 신청자에게 생산공정검사나 종합공정검사의 합격을 통보한다.

(3-2-2)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신청자에게 불합격내용을 통보 후 합격통지서를 회수하고 제품확인검사를 실시한다.

(3-2-3) 검사에 불합격 통보를 받은 자가 생산공정검사나 종합공정검사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불합격 통보를 한 날로부터 3개월 이후에 생산공정검사나 종합공정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.

#### (3-3) 수시품질검사 결과처리

수시로 실시하는 품질검사의 결과처리는 다음과 같다.

(3-3-1) 수시품질검사에서 불합격되었을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제조자나 수입자에게 동 사실을 통보하고 2차 수시품질검사를 실시한다.

(3-3-2) 2차 수시품질검사는 채취하는 시료수를 2배로 하여 실시한다.

(3-3-3) 2차 수시품질검사에도 합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불합격처리한 후 제품확인검사를 실시하고, 해당 형식에 대하여 수집검사를 실시한다.

(3-3-4) 불합격 통보를 받은 자가 생산공정검사나 종합공정검사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불합격 통보를 한 날로부터 3개월 이후에 생산공정검사나 종합공정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.

#### (4) 휴지 또는 검사의 종류 변경

규칙 별표 7 제3호에 따라 생산공정검사나 종합공정검사를 받고 있는 자가 검사대상 품목의 생산을 6개월 이상 휴지하거나 검사의 종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고 합격통지서를 반납하여야 한다.

#### (5) 재공정검사

규칙 별표 7제3호나목에 따라 생산공정검사나 종합공정검사를 받고 있는 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생산공정검사나 종합공정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.

(5-1) 사업소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

(5-2) 품목을 추가한 경우

(5-3) 생산공정검사나 종합공정검사 대상 심사에 합격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경우. 다만, 가스용품의 해당 품목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기존 품목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.

## 4.5 그 밖의 검사기준

### 4.5.1 수입품 검사

수입품에 대한 검사는 수입자가 원하는 장소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, 검사에 필요한 장비·재료 등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한다.

### 4.5.2 검사일부 생략

4.5.2.1 생산공정검사나 종합공정검사를 받는 자가 품목을 추가하는 경우 공정확인심사나 종합품질관리체계심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.

**4.5.2.2** 「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」에 따라 지정을 받은 인증기관으로부터 품질보증체계 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공정검사나 종합공정검사를 신청하는 경우 공정확인심사나 종합품질관리체계심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.

**4.5.3 불합격 제품 파기 방법(해당 없음)**

**4.5.4 세부검사기준**

그 밖의 설계단계검사와 생산단계검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## 부록 A 가스용품 제조업소 품질시스템 운영에 대한 일반기준

| 1. 서문    |  |
|----------|--|
|          | <p>가. 이 기준은 규칙 별표 7 제3호나목2)나)에 따라 생산단계검사 중 생산공정검사 및 종합공정검사를 통해서 가스용품을 제조하고자 하는 제조업소들이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작성된 것이다.</p> <p>나. 이 기준은 일반사항, 설계, 제조, 자체검사 및 의무 조항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, 가스용품 제조업소의 품질시스템이 공정확인심사나 종합적품질관리체계심사를 받기 위한 요구사항에 적합한가를 평가하기 위하여 사용된다.</p> |
| 2. 일반사항  |  |
| 가. 조직    |  |
| (1)      | 고객 및 법적요구사항에 충족하는 제품을 제공할 수 있는 기술적·업무적 능력이 있는 조직이어야 한다.  |
| (2)      | 최고경영자는 품질시스템에 필요한 공정 및 절차가 수립되고 실행되며 유지됨을 보장하여야 한다.  |
| (3)      | 설계 과정 또는 장기간 사용으로 나타날 수 있는 고장형태 등을 연구하여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다음사항을 포함하는 연구·개발 조직을 보유해야 한다.  |
| 【종합】     | (가) 연구·개발책임자 및 인력  |
|          | (나) 연구·개발에 필요한 적정 설비 및 장비  |
| 나. 품질시스템 |  |
| (1)      | 제조업소는 이 기준의 요구사항에 따라 품질시스템을 수립, 문서화하고 실행하여야 한다.  |
| (2)      | 품질시스템의 변경이 계획되고 실행될 때 시스템의 완전성이 유지되어야 하며, 지속적인 개선을 통하여 최신의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.   |
| (3)      | 최고경영자는 품질시스템의 개발 및 실행, 그리고 품질시스템의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실행증거를 다음을 통하여 제시하여야 한다.   |
|          | (가) 품질방침 및 품질목표의 수립  |
|          | (나) 경영검토(품질시스템의 효과성 및 제품의 개선)의 수행  |
| 다. 문서관리  |  |
| (1)      | 품질시스템의 문서화는 다음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  |
|          | (가) 품질방침 및 품질목표  |
|          | (나) 품질매뉴얼  |
|          | (다) 이 기준이 요구하는 문서화된 절차 및 기록  |
| (2)      | 품질시스템에 필요한 문서는 관리되어야 하며 다음사항의 관리에 필요한 문서화된 절차가 수립되어 있어야 한다.  |
|          | (가) 문서의 승인, 검토, 갱신 및 재승인   |
|          | (나) 문서의 식별(최신본, 외부출처 문서 등) 및 배포 관리   |
|          | (다) 효력 상실 문서의 오사용 방지   |
| (3)      | 기록은 품질시스템의 요구사항에 적합하다는 증거를 제공하기 위하여 작성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기록의 식별, 보관, 보호, 검색, 보유기간 및 처분에 필요한 관리를 위하여 문서화된 절차가 수립되어야 한다.  |
| 라. 인적자원  |  |
| (1)      | 제품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인원은 적절한 학력, 교육훈련, 숙련도 및 경력에 근거하여 적격하여야 하며 제조업소는 문서화된 절차를 통해서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.  |
|          | (가) 인원에 대한 적격성 결정 수행   |
|          | (나) 적격성을 충족시키기 위한 교육훈련 등의 제공 및 효과성 평가  |

|                   |  |
|-------------------|--|
|                   | (다) 적격성에 대한 적절한 기록 유지  |
| (2)<br>【종합】       | 제품의 설계·개발에 책임을 가진 인원의 경우 설계·개발 요구사항을 달성하고 적용할 도구 및 기법에 숙련됨을 보장하여야 한다.  |
| <b>마. 시설 및 장비</b> |  |
| (1)<br>【주기】       | 제품의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시설, 장비 및 업무환경을 결정, 확보 및 유지하여야 한다.<br>(가) 건물, 업무장소 및 유틸리티<br>(나) 프로세스장비(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)<br>(다) 지원서비스(운송, 통신 등)  |
| (2)<br>【주기】       | 제품 및 제조공정의 요구에 적합하도록 현장을 정돈,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.   |
| (3)<br>【종합】       | 종업원에 대한 잠재적인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수단이 설계, 개발 및 제조활동에 표현되어야 한다.   |
| <b>3. 설계</b>      |  |
| <b>가. 설계 및 개발</b> |  |
| (1)<br>【종합】       | 제품의 요구사항에 적합한 제품을 실현할 수 있는 설계 및 개발 능력을 확보하여야 한다.   |
| (2)<br>【종합】       | 제품설계출력은 요구사항에 대하여 검증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되고 배포 전에 승인되어야 하며 다음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<br>(가) 잠재적고장영향분석 등 분석결과 및 신뢰성결과<br>(나) 제품의 특성, 필요시 시방서<br>(다) 해당되는 경우, 제품의 실수방지를 위한 조치<br>(라) 도면 또는 수학적 기초데이터가 포함된 제품의 정의<br>(마) 제품설계검토 결과       |
| (3)<br>【종합】       | 공정설계출력은 요구사항에 대하여 검증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되고 배포 전에 승인되어야 하며 다음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<br>(가) 도면 및 필요시 시방서<br>(나) 제조공정 흐름도 및 레이아웃<br>(다) 잠재적고장영향분석 등 분석 결과<br>(라) 관리계획서<br>(마) 작업지침서<br>(바) 공정승인합격기준<br>(사) 제품/공정 부적합사항에 대한 검출 및 피드백 방법 |
| (4)<br>【종합】       | 설계 및 개발의 결과에 대한 타당성 확인을 실시해야 하며 타당성 확인결과 및 모든 필요한 조치에 대한 기록은 유지되어야 한다.   |
| (5)<br>【종합】       | 설계 및 개발의 변경은 쉽게 파악되고 그 기록이 유지되어야 한다. 변경사항은 해당되는 경우 검토, 검증, 타당성확인이 되어야 하며 실행 전에 승인되어야 한다.   |
| <b>4. 제조</b>      |  |
| <b>가. 구매</b>      |  |
| (1)<br>【주기】       | 구매한 제품이 규정된 구매요구사항을 충족시킨다는 것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검사 또는 그 밖의 활동을 수립하고 실행하여야 한다.  |
| (2)               | 규정된 구매요구사항에 적합한 제품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근거로 공급자를 선정하여야 한다. 선정기준은 수립되어 있어야 하며 선정에 관련된 모든 기록은 유지되어야 한다.   |
| (3)<br>【종합】       | 공급자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는 구매정책에 반영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공급자 관리방법은 달라져야 한다.   |
| <b>나. 생산</b>      |  |

|                     |  |
|---------------------|--|
| (1)                 | 제조업소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관리조건하에서 생산을 계획하고 수행하여야 한다.<br>(가) 필요에 따른 업무지침서의 사용<br>(나) 적절한 장비의 사용<br>(다) 측정의 실행<br>(라) 공정승인합격판정기준의 사용  |
| (2)<br>【주기】         | 제조업소는 제조단계에서 측정 요구사항과 관련하여 제품 상태를 식별하여야 한다.  |
| (3)<br>【종합】<br>【주기】 | 제조업소는 제조단계에서 측정 요구사항 및 추적성과 관련하여 제품 상태를 식별하여야 한다.  |
| (4)<br>【주기】         | 작업준비는 작업의 첫 가동, 자재의 교체 또는 작업변경 시마다 검증되어야 한다.   |
| (5)<br>【종합】         | 각 공정에 대한 적절한 통계적 기법은 양산 전에 결정되어야 하고 관리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한다. 산포, 공정능력 같은 기본적 개념은 조직 전반에서 이용되어야 한다.   |
| (6)<br>【종합】         | 제조업소는 제품, 제조공정에서 잠재적고장영향분석 등 분석결과를 고려한 관리계획서를 갖추어야 한다.   |
| (7)<br>【종합】<br>【주기】 | 제품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인원을 위하여 문서화된 작업지침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 이 지침서는 작업장에서 쉽게 열람이 가능하여야 한다.   |
| (8)<br>【종합】         | 제조업소는 주요공정을 파악하고 기계/장비/치공구의 보전을 위한 지원을 제공해야 하며 효과적으로 계획된 종체적 예방보전 시스템을 개발하여야 한다. 시스템에는 다음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<br>(가) 계획된 보전 활동<br>(나) 장비, 치공구 및 게이지의 포장 및 보전<br>(다) 주요 제조장비에 대한 교체용 부품의 가용성<br>(라) 보전 활동의 문서화, 평가 및 개선<br>(바) 생산, 수리 또는 폐기와 같은 상태를 규정한 식별                       |
| <b>5. 자체검사</b>      |  |
| <b>가. 검사방법 및 절차</b> |  |
| (1)<br>【주기】         | 제조업소는 수행해야 할 검사를 결정하고 결정된 요구사항에 대한 제품적합성 여부를 검사해야 한다. 이는 제품생산공정의 적절한 단계에서 수행되어야 한다.  |
| (2)<br>【주기】         | 검사한 제품에 대하여는 합격판정기준에 적합하다는 증거가 유지되어야 한다. 기록에는 제품의 불출을 승인하는 인원이 나타나야 한다.  |
| (3)<br>【종합】<br>【주기】 | 계수 값 데이터 샘플링에 대한 합격수준은 무결점이어야 한다.  |
| (4)<br>【주기】         | 측정은 요구사항에 일치하는 방법으로 수행되도록 하여야 하고 유효한 결과를 보장하기 위하여 측정 장비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.<br>(가) 규정된 주기 또는 사용 전에 국제표준 또는 국가표준에 소급 가능한 측정표준으로 교정 또는 검증. 그러한 표준이 없는 경우 교정 또는 검증에 사용된 근거를 기록<br>(나) 교정상태가 결정될 수 있도록 식별<br>(다) 측정결과를 무효화 시킬 수 있는 조정으로부터 보호<br>(라) 취급, 유지보전 및 보관하는 동안 손상, 열화로부터 보호 |
| (5)<br>【주기】         | 교정 및 검증결과에 대한 기록은 유지되어야 하며 측정값은 보정의 형태로 활용되어져야 한다.   |
| (6)<br>【종합】         | 통계적 방법을 사용하여 각 형태의 측정 및 시험의 결과에 나타난 측정시스템의 변동을 분석하여야 한다.   |
| (7)                 | 제조업소는 1년에 1회 이상 설계단계검사 전체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그 기록을 유지해야  |

|                     |  |
|---------------------|--|
| <b>【주기】</b>         | 한다.  |
| (8)<br>【종합】<br>【주기】 | 제조업소는 1년에 2회 이상 설계단계검사 전체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그 기록을 유지해야 하며 이 검사는 KS Q 17020에 준하여 실행하여야 한다. <개정 14.11.17>   |
| (9)<br>【종합】         | 제조업소의 시험실은 다음 기술적 요구사항을 규정하여 품질시스템 문서화에 포함되어야 한다.<br>가) 인원, 장비 및 시설의 적격성<br>나) 시험을 관련 규격에 따라 정확하게 수행하는 능력<br>다) 외부시험실은 KS Q ISO IEC 17025 또는 같은 수준의 인정기관 <개정 14.11.17>   |
| <b>나. 시정 및 예방조치</b> |  |
| (1)<br>【주기】         | 부적합품 및 의심스런 제품이 식별되고 관리됨을 보장하여야 한다.  |
| (2)                 | 부적합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, 문서화된 절차에는 다음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.<br>(가) 부적합의 검토 (고객불만 포함)<br>(나) 시정조치의 결정, 실행 및 기록  |
| (3)                 | 품질방침, 품질목표, 심사결과, 데이터분석, 시정조치, 예방조치 및 경영검토의 활용을 통하여 품질시스템의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.  |
| (4)                 | 부적합의 발생방지를 위하여 잠재적 부적합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예방조치를 실행하여야 한다.  |
| <b>다. 내부감사</b>      |  |
| (1)                 | 제조업소는 품질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실행되고 유지되는지에 대하여 계획된 주기로 내부감사를 수행하여야 한다.   |
| (2)                 | 감사의 계획, 수행, 감사의 독립성 보장, 결과의 보고 및 기록유지에 대한 책임과 요구사항은 문서화된 절차에 규정되어야 한다.   |
| <b>6. 의무</b>        |  |
| <b>가. 합격표시</b>      |  |
| (1)<br>【주기】         | 제조업소는 합격표시(증명서나 각인)에 대한 관리규정을 문서화해야 하며, 합격표시의 수령·사용·보관, 폐기 등에 관한 기록은 즉시 최신의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관리규정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<br>(가) 합격표시(증명서나 각인)는 반드시 권한 있는 직원만이 취급<br>(나) 합격표시는 반드시 계획된 절차에 따라 최고경영자/ 경영대리인의 승인을 받아 사용<br>(다) 합격표시의 사용내용에 대한 기록<br>(라) 합격표시의 오용방지를 위한 자체계획을 수립<br>(마) 합격표시는 훼손 또는 도난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관 |
| (2)<br>【종합】<br>【주기】 | 합격표시 제작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문서화해야 하며 합격표시의 제작·변경에 대한 사항은 전부 기록되어야 하며 최신의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.   |
| <b>나. 교육</b>        |  |
| (1)<br>【주기】         | 생산공정검사 또는 종합공정검사를 받고자하는 제조업소는 품질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19조제3항제1호에 따라 가스용품의 검사를 위탁받은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검사기관에서 실시하는 가스용품의 품질 및 안전관리 관련교육을 1인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.   |
| (2)                 | 제조업소는 3년을 주기로 영 제19조제3항제1호에 따라 가스용품의 검사를 위탁받은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검사기관에서 실시하는 가스용품의 품질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프로그램에 1인 이상 참가하여야 한다.  |
| <b>다. 안전관리</b>      |  |
| (1)                 | 제조업소는 최근 1년간 제품결합으로 인한 사고가 없고 수집검사를 받은 결과 부적합이 없어야  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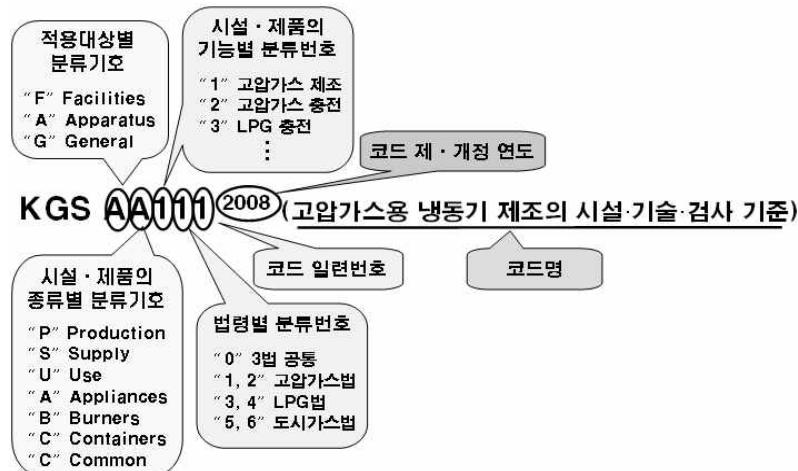
|                   |  |
|-------------------|--|
|                   | 한다.  |
| (2)<br>【종합】       | 제조업소는 최근 3년간 제품결함으로 인한 사고가 없고 수집검사를 받은 결과 부적합이 없어야 한다.                     |
| <b>라. 그 밖의 사항</b> |  |
| (1)               | 제품의 품질 저하 또는 사용자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사안이 발생한 경우에 제조업소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 |
| (2)               | 제조업소의 품질시스템 운영상에 중대한 변경이 있을 경우 15일 이내에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.                 |

- 비고 1. 【종합】은 종합공정검사 대상에만 적용하는 기준  
2. 【주기】는 검사주기에 따른 검사 시 적용하는 기준  
3. 표시가 없는 조항은 공정확인심사나 종합적품질관리체계심사의 공통 기준



## KGS Code 기호 및 일련번호 체계

KGS(Korea Gas Safety) Code는 가스관계법령에서 정한 시설·기술·검사 등의 기술적인 사항을 상세기준으로 정하여 코드화한 것으로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서 심의·의결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승인한 가스안전 분야의 기술기준입니다.



| 분류                    | 기호                    | 시설구분  | 분류       | 기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시설구분  |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|
| 제품(A)<br>(Apparatus)  | 기구(A)<br>(Appliances) | AA1xx | 냉동장치류    | 제조·충전<br>(P)<br>(Production) | FP1xx | 고압가스 제조시설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AA2xx | 배관장치류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FP2xx | 고압가스 충전시설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AA3xx | 밸브류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FP3xx | LP가스 충전시설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AA4xx | 압력조정장치류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FP4xx | 도시가스 도매 제조시설 |
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AA5xx | 호스류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FP5xx | 도시가스 일반 제조시설 |
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AA6xx | 경보차단장치류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FP6xx | 도시가스 충전시설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| 연소기(B)<br>(Burners)   | AA9xx | 기타 기구류   | 시설(F)<br>(Facilities)        | FS1xx | 고압가스 판매시설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AB1xx | 보일러류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FS2xx | LP가스 판매시설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AB2xx | 히터류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FS3xx | LP가스 집단공급시설  |
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AB3xx | 렌지류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FS4xx | 도시가스 도매 공급시설 |
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AB9xx | 기타 연소기류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FS5xx | 도시가스 일반 공급시설 |
| 용기(C)<br>(Containers) | 탱크류                   | AC1xx | 탱크류      | 판매·공급<br>(S)<br>(Supply)     | FU1xx | 고압가스 저장시설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AC2xx | 실린더류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FU2xx | 고압가스 사용시설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AC3xx | 캔류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FU3xx | LP가스 저장시설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AC4xx | 복합재료 용기류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FU4xx | LP가스 사용시설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| 기타 용기류                | AC9xx | 기타 용기류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FU5xx | 도시가스 사용시설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| 저장·사용<br>(U)<br>(Use)        | GC1xx | 기본사항         |
| 기타 용기류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GC2xx | 공통사항         |

KGS AA537 2014

